준 비 서 면

사 건

원 고 강용석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8. 18. 피고가 디스패치에서 네이버 뉴스에 제공한 "[단독] 강용석, 홍콩 스캔들 증거... 그가 답해야 할 의혹 5"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 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라는 내용의 댓글(이하"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합니다.

나. 검찰은 이 사건 댓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2015. 11. 30. 동일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고소로 진행된 모욕죄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00검찰청 00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댓글이 "사실을 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갑 제26호증). 즉 검찰은 이 사건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미 확인해준 것입니다.

다. 이 사건 댓글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의 어느부분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보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댓글을 달았던 문제의 기사는 원고와 유명 블로거인 소외 김미나 사이의 스캔들에 대해 5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홍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과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닌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장의 사진과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을 제1호증 디스패치 기사).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방송에서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을 보았고 원고를 믿었으나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부인을 한 것이 거짓 이라고 판단되어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껴 그러한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원고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갑 제2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또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을 보아도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라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를 믿었으나 그러한 믿음이 깨지면서 놀랐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 원고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라는 부분은 그동안 거짓 주장을 하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온 원고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 부분은 피고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의 입장에서 오히려 원고의 아이들을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누가 보아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직업적으로 다수의 방송에 출연한 유명인으로서 공인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가 다뤘던 내용은 공인인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것으로 공적인 관심사안입니다. 즉 명백히 공인이자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 원고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안이므로 공적인 관심영역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적인 사안으로 대중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원고는 오히려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이러한 스캔들을 언급하고 당당하게 부인함으로써사회적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을 제2호증 이투데이 기사, 을 제3호증 TV 리포트 기사). 이렇게 원고는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댓글은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20호증 디스패치 기사

1. 을 제21호증 이투데이 기사

1. 을 제22호증 TV 리포트 기사

2017. 3. 14.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가 연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소액) 귀중